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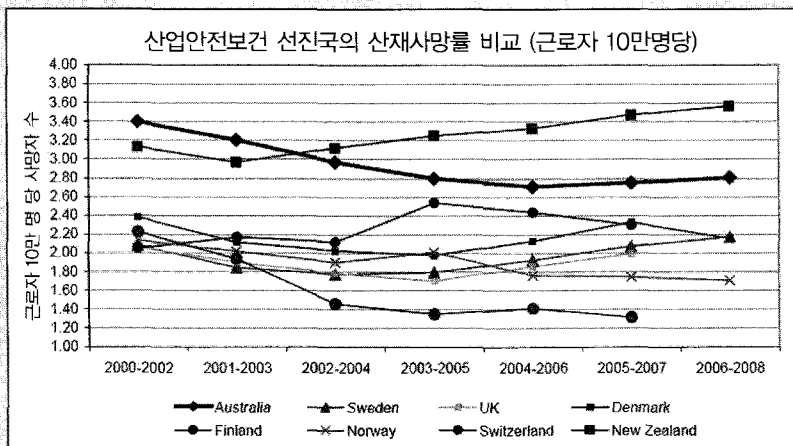


호주 Safe Work, 호주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산재보상 현황 보고서 발표

호주 Safe Work는 호주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산재 및 질병 경감 노력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산재보상기관 및 산업안전보건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다.

- 본 보고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향상, 산재보상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 및 의사결정의 바탕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. 보고서를 통해 호주내 국가 산업안전보건 전략의 기간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, 산업안전보건의 향상 및 산재보상에 기여한 요인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. 또한, 호주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상의 동향 파악, 외국의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수록하였다. 본 보고서는 호주 Safe Work의 주도 하에 호주 및 뉴질랜드의 산업안전보건기관 및 산재보상기관의 협조로 제작되었다.
- 2002~2012년 호주 산업안전보건 국가전략 목표달성 중간진행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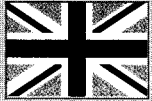
2012년까지의 목표	2008~2009년 달성실적
재해 발생률 및 근골격계 질환 보상청구 사례 40% 감소	22% 감소 달성: 목표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
업무중 사망자 수(산재보상자에 해당) 20% 감소	25% 감소하여 목표를 초과달성함
2009년까지 세계 최저수준의 외상성 사망률 달성	2006~2008년까지 호주의 산재사망률은 세계에서 7번째로 낮은 수준임



■ 산업안전보건 성과

- 업무상 질병 및 사고 청구건수가 14% 감소하였다.
'04~'05 (근로자 1000명당 16건) → '07~'08(근로자 1000명당 13.8건)
- '08~'09년 기간 동안 총 223건의 사망산재가 발생하여 산재보상을 받았는데, 그 중 172명은 상해 및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산재, 51명은 기타 질병이 원인으로 밝혀졌다.
- 재해다발 업종은 다음과 같다.
 - 농업 · 임업 · 어업: 근로자 1000명당 25.2건의 산재보상 청구
 - 운수 · 창고업: 25건
 - 제조업: 23.4건
 - 건설업: 21.8건
- 2008~2009년의 기간 동안 호주 전역의 11만 4천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했으며 총 5만 6천여 건의 주의조치를 내린바 있다.

〈출처〉 <http://safeworkaustralia.gov.au/AboutSafeWorkAustralia/WhatWeDo/Publications/Pages/CPM12.aspx>



Cardinus Risk Management, 업무관련 근골격계질환의 사회·경제적 위험 강조

업무상 상해예방 및 위험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영국의 Cardinus Risk Management社は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상지장애를 비롯한 업무상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, 그동안의 주요 판례 소개, 상지장애로 인한 기업과 사회의 비용에 대해 논의하였다.

■ 상지장애는 근골격계 질환의 한 종류로 손목관절증후군, 건초염, 건염, 상과염, 진동에 의한 백납병, 활액낭염, 요통 등을 포함한다. 영국의 상지장애에 대한 법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.

- 성문법: 1974년 제정된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이고 실천가능한 수준의 안전, 보건 및 복지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.
- 민법: 영국 민법에 따라 사업주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. (근로자의 업무중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음)

■ 상지장애 주요 판례

- Ping v Esselte-Letraset(1992년)
:영국 Kent지역의 인쇄소에 근무하던 9명의 근로자에서 건초염, 상과염 등의 상지장애가 발생하였다. 반복적 움직임을 요하는 이들 근로자의 업무성격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.

· 판결의 요지: 사업주는 근로자가 팔목이나 팔 등에 통증이 생길 경우 이와 같은 증상을 즉각적으로 사업주에 보고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고, 근로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원인을 밝혀낼 의무가 있다. 이런 절차의 부재로 인해 사업주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.

- Mitchell v Atco (1995년)
:상당한 무게의 모터를 들어 올리거나 뒤집는 작업을 하던 원고는 상지장애 판정을 받은 뒤 산재보상 청구를 하였다. 회사 내 교대근무에 대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기간 과중업무에 시달렸다고 호소함에 따라, 판결의 요지는 원고측 의사의 소견이 회사측의

사 소견보다 우선시된다고 밝혔다. 이에 따라 총 42,600 파운드의 보상판결을 내렸다.

- 영국사회보장체제하의 산재보상제도에 따르면 무과실 보상(no-fault compensation)도 가능하다. 지금까지의 상지장애 산재판결사례를 보면 특정 업무상의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만 산재로서 보상받을 수 있었다.

■ 근골격계 질환이 기업에 미치는 비용

- 2009년 EU에서 발표한 "Fit for Work"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·경제적 비용은 2400억 유로에 달한다고 한다. 병가 원인의 49%는 근골격계 질환이며, 영구적 신체능력 상실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원인의 60%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나타났다.

근골격계 질환의 사회적·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볼 때, 선진사례를 활용한 개입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위험성 평가방식과 업무복귀 프로그램의 실행이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되었다. 📌

※ Cardinus Risk Management 社: 영국의 디스플레이 장비 규제 및 평가, 화재 안전 및 위험 평가기관. 온라인을 통한 업무상 상해예방 및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

〈출처〉 <http://www.ergojournal.co.uk/category/whitepapers/>

제공 |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